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이연희·정준호·민홍철

박 정・김정호・염태영

이정문 · 김남희 · 복기왕

윤종군 · 송기헌 · 박상혁

손명수 · 안태준 · 한민수

김기표 • 허종식 • 박홍배

허 영·김성화·조 국

한준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 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 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 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 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 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 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 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u><</u> 삭	제>			
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					
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u>다.</u>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u>관한 사항</u>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 임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 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u>비용</u>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 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 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 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 <삭 제>

<삭 제>

- 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 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 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 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삭 제>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 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

<삭 제>

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신 설>

<u><삭 제></u>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u>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u> <u>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u> 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 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
 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 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 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 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 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 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 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 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 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 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 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u>설></u>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 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 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